

# 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#### 대리경작자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자 제324호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전 3,305㎡부동 산 대리경작자를 소외 김□□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전 3,305㎡의 소유자로 19○○년부터 19○ ○년까지 고추를 경작하여 왔습니다.
- 2. 원고가 위 토지에 고추만을 심어 지력이 약해져 점차 수확량이 줄어 20〇〇년 에는 휴경을 하였으며, 20〇〇년에는 개토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.
- 3.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 소유 위 토지가 유휴농지라며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20○○. ○.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○○. ○. ○. 소외 김□□로 대리경작자로 하고, 경작기간은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, 사용료는 연간 금10만원으로 하는 대리경작자지정 처분을 하였습니다.

- 4. 그러나 원고가 위 2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리경작토지는 원고가 15 및 보이 변부터 1900년까지 고추만을 경작하여 지력이 약해졌고 해마다 생산량이 하여 2000년에 휴경한 것이며, 2000년 0월쯤 객토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- 5. 그러나 피고의 위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.

첫째 : 원고 소유 농지는 지력 증진 및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으로 농지법 제20조 제1항의 유휴농지가 아닙니다.

둘째: 피고가 대리경작자지정처분시 지정한 연간 10만원의 사용료는 원고가 고 추농사를 하며 수확한 고추생산량에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적게 평가 된 수익금으로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.

6. 따라서 피고의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농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(원고는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을 20○○. ○. ○.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.)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. 갑 제2호증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1. 갑 제3호증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 2000년
 0월
 0일

 원
 고
 00
 (인)

### 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	참조 ***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	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	9 ~ 34조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